

# 표준시험약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친환경시험원(주)(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 시험의 신청, 실시 및 시험성적서 발급 등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원과 시험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시험원이 실시하는 이화학적·물리학적 시험·분석·검정·측정평가 또는 검토를 말한다.
2. '시험의 신청'이라 함은 개인·단체·법인이 시험원에 시험을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계약'이라 함은 신청인이 시험원에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시험원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시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4. '시료'라 함은 시험대상물(제품 및 재료 등)에서 시험을 위해 채취 또는 추출한 것을 말한다.
5. '모집단'이라 함은 '시료'인 제품이 속한 동일한 종류의 제품 집단을 말한다.
6. '실무자'라 함은 시험원의 피고용인 또는 수임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시험실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7. '시험성적서'라 함은 시험원이 실시한 시험의 결과(성적)를 기재한 보고서면을 말한다.

## 제2장 시험계약

### 제3조 (시험계약의 체결)

1. 시험계약은 신청인이 소정의 시험의뢰서에 의하여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원에서 접수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2. 1항에서 서면 접수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 승낙에 따른 합의나 계약은 시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3. 신청인의 시료제출, 시험원의 시료보관, 시험의 실시 등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로써 시험계약의 체결을 갈음하거나 시험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4. 1항의 시험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4조 (시험원의 거부·철회권)

1.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원은 시험의뢰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미 체결된 시험계약이라도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전란, 법령의 규제, 무역분쟁, 화재 기타사고(일방철회), 노사분규, 시험인력이나 재료확보의 어려움, 기계·설비의 고장(접수거부)으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완료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② 시험의 실시가 국가의 법령이나 시험원의 내부규정,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접수거부)
  - ③ 시험원이 시험을 실시할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접수거부)
  - ④ 신청인이 제시한 시료가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접수거부)
2. 1항의 시험계약 철회는 신청인에게 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시험계약 철회(해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5조 (시험의 신청)

1. 신청인은 시험을 신청함에 있어 시험의뢰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진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

를 사용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시험의뢰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 ② 시험의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피하거나 시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원이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
  - ③ 실무자의 건강,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신청인은 시험의뢰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보증한다.
3. 신청인은 시험의뢰서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있거나 그 기재를 누락 및 소홀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시험의 시행착오, 시험비용의 증가, 시험의 오류, 실무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 제3장 시험비용

### 제6조 (시험비용의 종류와 산정)

1. 신청인은 시험실시에 대한 대가로 시험원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한다.
2. 시험수수료는 항목별 시험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3. 시험수수료의 가액은 시험원이 당해 시험의 항목, 복잡성·난이도, 소요시간, 인건비 등 불가수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제5조 3항, 제9조 5항, 제11조 2항 및 기타 시험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시험비용이 증가한 경우, 시험원은 그 증가한 시험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시험이 시험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시험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시험원은 시험수수료 외에 시험원이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 (시험비용의 지급 시기, 방법)

1. 시험수수료는 시험의뢰서를 접수하고 시험원의 접수확인증 발행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출장비는 시험원의 청구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1,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원은 신청인에게 시험비용을 선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4. 일체의 시험비용은 대한민국의 원화로 표시된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시험신청인이 시험원에 직접 내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 비거주인,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시험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 (시험비용의 정산 및 환불)

1.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실시가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시험수수료, 출장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① 시험수수료 : 신청인이 접수확인 후 24시간 이내 문서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험원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② 출장비 : 출장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을, 출장을 착수한 경우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험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제7조 3항에 따라 시험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게 할 경우, 시험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1항을 준용한다.
3.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험원의 철회에 의하여 시험 착수 후에 시험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중 기본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하고 실시수수료는 시험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출장비에 대하여는 1항 ②를 준용한다.
4. 시험비용의 정산 및 환불 의무는 신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제4장 시험의 실시

### 제9조 (시험의 실시)

1. 시험은 시험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의 방법은 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험원이 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원은 다른 시험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3항의 시험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원은 전적으로 시험원의 재량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4항 및 신청인이 시험방법의 선택을 시험원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 신청인은 시험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시험원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10조 (시험의 중단, 보류)

1. 시험원은 제4조 1항 ①, ④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험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2. 1항의 시험 중단 및 보류가 장기화되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 또는 시험원은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 (시료 등의 제공)

1. 신청인은 시험원에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시험의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시험의 시행착오, 시험비용의 증가, 시험의 오류, 실무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3. 신청인은 제공하는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에 대하여 시험원의 시료채취, 시험실시, 유지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법적장애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 제12조 (시료 제공·채취의 요구)

1. 시험원은 신청인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1항은 시험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시험원은 1항의 시료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함에 있어 시험원이 정하는 대상, 종류(외관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용, 한도건본 시료 등 포함), 분량, 방식(랜덤 샘플링 등 포함)에 의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4. 시험원은 1항의 시료채취에 있어 시료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가 속한 모집단의 물건에 대하여 열람, 분류, 조사, 검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시험을 위하여 신청인이 시험원에 제공하거나 시험원이 채취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은 시료에 관하여는 접수 시 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시험완료 후 1개월 이후로 시험원의 소유에 속한다.

#### 제13조 (시료의 처분·폐기)

1. 시험 실시로 파손·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신청인, 기타 권리자의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완료와 동시에 폐기, 파쇄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시험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및 물건에 대하여도 1항을 준용한다.
3. 시험원은 1,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오염, 파손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건강·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관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4. 1,2,3항들에 따라 시료 기타 물건을 폐기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고 비용의 과다가 물건의 본래적 특성이나 하자 기타 시험원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비용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4조 (재시험)

1. 신청인은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시험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험원은 1항의 재시험 청구가 있을 경우, 시험의 특성상 재시험이 불가능·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14조의 재시험은 재시험으로 소요되는 시험비용의 지급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원이 재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초의 시험결과와 중요한 부분에서 오차범위이상의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수수료 중 항목별 시험비용을 면제한다.

### 제5장 시험성적서

#### 제15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1. 시험성적서는 시험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의 원본 1부로 발급된다. 다만, 영문성적서의 경우 KOLAS의 규정에 따라 기술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원은 시험성적서 부분을 발급하거나 원본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① 시험성적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부분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 ② 시료가 다수로서 1부의 시험성적서로 발급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시험원의 규정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발급하는 경우
3. 2항에 따라 시험성적서 부분 또는 분할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부분 또는 분할성적서의 전체 발급 수량 대비 당해 성적서의 순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4. 15조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시험원의 시험성적서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6조 (시험성적서의 사용 제한)

1. 신청인은 시험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시험성적서를 공개·사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공표) 또는 홍보(광고)
  - ② 상품의 판촉용 광고, 홍보 활동에의 이용
  - ③ 각종 제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
2. 1항의 공개·사용·제공 금지는 시험성적서의 전제 외에 일부 게재(설명), 요약 게재(설명),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사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시험성적서가 신청인에 의하여 소송, 중재, 화해 등 분쟁 절차에서 증거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시험원은 신청인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7조 (시험성적서 기재사항의 의의)

1.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를 표시한 기재사항은 그 시험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
2. 시험성적서의 그 어떠한 기재도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 ① 시료를 채취한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제품이 속한 모집단의 성능·품질·효능·형상 등에 관한 사항
  - ② 시험의 대상이 된 시료가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모집단에서 적절하고 평균적인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라는 점
  - 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단체·법인의 기술, 신용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원을 신청인의 대리인, 보조자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 밖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시험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4. 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의 판매자, 제조자의 계약상,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며, 구매자의 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시험원, 실무자 기타 시험원의 피고용인이 시험성적서 외의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결과 역시 1항 내지 4항과 같다.
6. 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시험성적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다.

## 제6장 책임과 손해배상

### 제18조 (안전사고)

1. 시험을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또는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은 신청인의 책임에 속한다.
2. 실무자가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시료채취 등 준비행위를 하던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1항의 위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확증이 없고, 실무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이 개입된 것이 아닌 한, 신청인은 사고로 인하여 실무자가 입은 손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2항의 사고로 인하여 시험원이 실무자에게 적법하게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제19조 (제품의 파손)

1.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이 시험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중에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 그것이 수행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시험원 또는 실무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1항에서 시험원 또는 실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배상 금액은 파손·망실된 당해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의 취득원가(수입품의 경우 송장가격) 또는 지불된 시험수수료의 3배(이자 제외) 중 적은 금액으로 국한한다.

### 제20조 (시험의 오류)

1. 시험원은 시험의 오류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실,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오류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2. 1항의 책임 면제는 시험의 오류로 인하여 직접 초래되거나 간접으로 파생된 사태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1,2항의 책임 면제는 시험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기타 시험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신청인은 20조의 책임 면제가 제17조 1항에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제17조 2항 및 6항과 같이 이를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는 점 및 시험은 언제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신청인은 시험의 오류, 시험성적서 기재의 부실 등을 사유로 시험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1조 (구상)

1. 시험의 오류가 신청인의 부주의나 과실, 시험의뢰서 기재의 부실이나 허위,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의 하자 기타 이 약관 규정의 위배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시험원이 시험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행한 손실보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시험의 오류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도 신청인이 제17조에 위배하여 시험성적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실, 손해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그 밖의 법적 책임)

1. 제18조 내지 제21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험원, 실무자 기타 피고용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책임은 시험원, 실무자 기타 피고용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면책한다.
2. 1항의 책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또는 시험신청일로부터 2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한다.

## 제6장 약관의 효력, 해석, 분쟁 해결 등

### 제23조 (약관의 적용과 효력)

1. 시험원의 특별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시험원의 피고용인과 신청인 사이의 그 어떤 합의와 계약으로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약관의 배제는 오로지 시험원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3.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2항과 같다.
4.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수정하는 특별약관, 서면 합의가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제24조 (준거법·언어)

1. 이 약관 및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 협약, 협정이나 특별약관 기타 시험원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일체의 서면은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국어로 체결·작성되어야 한다.
2. 1항의 약관, 계약, 협약, 협정, 서면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판례, 상관습을 준거로 한다.
3. 1항의 약관, 계약, 협약, 협정, 서면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는 경우에도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어로 작성된 것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24조에 위배하여 외국법 및 외국어를 준거법 또는 언어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제25조 (분쟁의 해결절차 및 관할)

1. 이 약관 또는 약관이 적용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은 1차로 당사자 간의 조정, 중재, 화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2. 1항의 분쟁에 대하여 일방이 소를 제기할 경우 수원지방법원을 그 전속관할로 한다.